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49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495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임호택

변론종결 2024. 3. 7.

판결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4.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10,920,440원의 한도 안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920,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수입 정리보류 결의가 이루어진 2016. 10. 31.이 아니라 추적조사를 진행한 2020. 7. 22. 이 사건 각 증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그로부터 1년 안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라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갑 제6호증”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결손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삭제되었고, 2013. 5. 30. 국세청훈령 제1998호로 개정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라 법 개정 전의 ‘결손처분’을 현재는 ‘정리보류’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의 “제7호증”을 “제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아닌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위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각 증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로 조사하여 위 결의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통해 사해의사를 포함한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4, 15행의 “2020. 10. 12.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가 B의 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를 삭제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설정은, 판사 유진현

별지